

사고에 대한 정의

유해 요소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OPWDD의 노력

OPWDD의 사명은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OPWDD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의센터(Justice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People with Special Needs)와의 협력 하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유해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건 및 관리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이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OPWDD와 제공업체 대행기관은 OPWDD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인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Part 624의 Title 14 (14 NYCRR Part 624)를 준수합니다. 이 규정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2페이지의 사고 유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고를 당할 경우에 취해야 할 단계를 정의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직원들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사고, 즉 “보고해야 하는 사고” 및 “중요한 사건”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고와 관련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의 건강, 안전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합니다.
- 학대 및 상해를 포함하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고 그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특정 사고를 검토하고 추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 검토 위원회(Incident Review Committee)를 구성합니다.
- 추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개발하고 직원을 교육 및 감독합니다.

이 안내 책자는 사고와 관련된 OPWDD의 기대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OPWDD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대리하여 변호할 자격을 갖춘 사람 및 기타 관련 당사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규정의 전체 요건에 대해서는 14 NYCRR Part 624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pwdd.ny.gov/regulations_guidance/opwdd_regulations

2014년 4월 재발행



목차

대행 기관의 사고 처리 방법	2
사고 유형...	2
정보 사용 방법 및 시기	3
조사 실시 방법	3
유해 요소로부터 개인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방법	4



통지를 수신하고 사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Jonathan's Law에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관련된 사고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Part 624에는 Jonathan's Law 통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모든 사고에 대한 통지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에 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법적 보호자, 부모, 배우자 또는 치료 및 관리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성인이 된 자녀가 포함됩니다.

Part 624는 자격을 갖춘 사람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변호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사고 통지를 전달할 것을 규정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 변호인 및 통신문들은 사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Willowbrook Class 회원에 관련된 통지에 대한 추가 OPWDD 지침이 있습니다.

대행 기관의 사고 처리 방법

사고 검토 위원회는 반드시 사고를 보고, 조사, 기록 및 검토해야 하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제공업체는 OPWDD에게 다음 사고를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 보고해야 하는 학대 및 방치 사고
-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
-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

제공업체는 보고해야 할 사고 또는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준은 아니나 경미하고 중요한 사건 및 기타 잠재적으로 유해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사고는 뉴욕에 소재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의센터 (Justice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People with Special Needs, 이하 Justice Cente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정의센터(Justice Center)는 OPWDD 등 해당 주의 대행 기관에서 인증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OPWDD에서 승인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OPWDD 뿐만 아니라 정의센터(Justice Center)에도 보고되어야 합니다.

사고 유형...

보고해야 하는 학대 및 방치 사고에는 물리적, 성적, 정신적 학대와 고의로 부적절하게 구속하는 경우 등 기타 금지된 행위와 방치가 포함됩니다.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에는 악영향, 격리 및 기타 혹사 행위 및 실종과 질식 사고를 유발하는 투약 과오가 포함됩니다.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에는 입원이 필요한 상해, 절도 또는 금전적 착취(미화 100달러 이상의 기금 및 수익, 인출 또는 신용카드) 및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사망이 포함됩니다.

경미하고 중요한 사건에는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절도 및 금전적 착취(미화 15달러~100달러)가 포함됩니다.

사고 유형 및 각 정의는 14 NYCRR Part 624를 참조하십시오.

OPWDD 147, OPWDD 148 및 학대 혐의와 관련된 기타 기록/문서를 공유할 경우, 제공업체는 서비스를 받는 다른 개인과 직원의 이름 및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수정" 또는 편집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습니다.

조사 실시 방법

- 보고되는 모든 사고는 사고는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 조사관은 다양한 정보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사고 요약, 결론 및 권고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확대 또는 방치 보고서에는 “입증된” 또는 “입증되지 않은” 발견점이 포함됩니다.
- 조사 보고서는 검토를 위해 대행 기관의 사고 검토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사고 검토 위원회는 조사 절차(해당 사건이 정의센터(Justice Center) 또는 OPWDD Central Office에서 조사된 사건은 제외)를 검토 및 모니터링하고 일부 사건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권고해야 합니다.

정보 사용 방법 및 시기

- 자격을 갖춘 사람, 변호인 및 통신원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유선을 통해 다음 사고 보고서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대행 기관 책임자(또는 책임자의 피지명인)와의 면담이 제공됩니다.
- 사고 통지를 받은 자격을 갖춘 사람과 변호인에게는 보고서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고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보고서(OPWDD Form 148)가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 사고 통지를 받은 자격을 갖춘 사람과 변호인은 사고 보고서 사본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요청된 보고서의 수정된 사본을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사람(Part 624에서 “적격 요청자”로 지칭)은 또한 조사 보고서 등 보고될 사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전달 전에 수정되어야 하며, 사고 종결일로부터 21일 이내 또는 조사가 이미 완료된 경우 요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요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조사에서 작성된 기록 또는 문서에 대한 서면 요청은 사고를 보고하는 대행 기관에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Part 624에는 이러한 요청과 해당 시간대와 관련된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르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요청된 기록 및 문서는 사고 정보를 요청한 사람이 정보를 통해 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이름 및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수정(편집)되어야 합니다.



후속 조치를 위해 변호인(“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옹호자)은 누구와 상담해야 하나요?

변호인은 사고 통지를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질문해야 하며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감독관과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대행 기관 책임자나 피지명자와의 대화 제안을 받았을 때 이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변호인은 질문이나 우려를 대행 기관 책임자나 기타 상급 관리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증된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확대 또는 방치 보고서의 경우 정신 위생 법률 서비스(MHLS)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OPWDD Incident Management Unit는 미 해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 기관에 대한 사고 기록 요청을 거부당한 변호인을 위한 행정 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OPWDD Incident Records Appeals Officer, 44 Holland Avenue, Albany, NY 12229 로 문의하십시오.

Laurie A. Kelley, 사무소장 대리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NYS 사무소
 (New York Stat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tanding Committee on Incident Review
 44 Holland Avenue
 Albany, NY 12229

이 브로셔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소로 문의하십시오.
 OPWDD
 Standing Committee
 on Incident Review
 opwdd.scir@opwdd.ny.gov

**OPWDD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학대받는 상황을 보고
 하려는 일반인일 경우,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
 습니다.**

- 피학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기관의 이름을 알고
 계실 경우, 제공업체 대행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학대 상황
 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학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정
 보를 모르실 경우, OPWDD에 해당 학대 상황을 보고할 수 있
 습니다. Incident Management Unit 웹페이지에 있는 OPWDD 웹사
 이트에서 현지 Incident Compliance Officer의 연락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후 Incident Management Unit에 연락하
 시려면 1-888-479-6763으로 연락하십시오.
- NYS 정의센터(Justice Center)는 OPWDD가 인증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학대, 방치 및 중요한 사고 보
 고를 위해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전화번호는 1-855-373-
 2122입니다.

유해 요소로부터 개인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방법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변호인 및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를 받는 사람
 이 올바른 서비스를 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맞춤 서비스 계획 및 지원을 검토하는 팀 회의에서 시작될 수 있습
 니다. 이 회의에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변호인을 포함하는 팀이 서비스 제공 시 필요
 한 보호장치 또는 어떻게 중재할 지에 대하여 토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장치는 서
 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맞게 개인화되고 특정화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원인불명의 상해가 반복될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변호인은 상해를 입은 사람
 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
 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
 고에 관한 특정 조치일 경우 다음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 대상자의 행동 또는 태도 변화
- 대상자의 매일 및 매주 생활 변화
- 보조 기구의 사용, 필요 가능성 또는 변경
- 주의가 필요한 물리적 치료, 건강 또는 위생 문제
-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재 방법 또는 지원 모체
- 건강 또는 임상 평가를 포함하는 평가
- 감독 수준
- 직원 교육 및 재교육 노력
- 생활 또는 서비스 환경 상태



팀 회의는 자격을 갖
 춘 사람 또는 변호인
 과 다른 구성원이
 상해, 특히 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재발
 되는 상해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